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미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미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2006年 2月 碩士學位論文

重要强力犯罪의 警察搜查能力 提高方案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姜 七 遠

重要强力犯罪의 警察搜查能力 提高方案

A study on Reinforcemen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Capacity against Major Violent Crimes

2006年2月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姜 七 遠

重要强力犯罪의 警察搜查能力 提高方案

指導教授 文 正 珉

이 論文을 法學碩士學位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姜 七 遠

姜七遠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 員 朝鮮大學校 教 授 印

2005 年 11 月 日

朝鮮大學校大學院

ABSTRACT

A study on Reinforcemen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Capacity against Major Violent Crimes

Lim, Byoung Rak

Advisor: Prof. Moon, Jeoung Min.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e accidents which are difficult as a kind same by specific criminals or similar crime of violence criminal is recently small crime with abnormal trial rulers solves a back being frequent to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 techniques are increasing misgovernment. Therefore, promptness result elasticity is required, and can be desired at the public peace administration section of the police.

Crime of violence guilt is left a serious nightmare or anxiety for people to a life or the body not to mention important infringement. Besides, be given the physical enemy that a recovery is impossible, a mental shock to the family with a victim, and a sound family is dissolved, and be occurring until cases. Currently our police must grope for a change quantitative, to be in quality large while meeting a change of the environment that is an enemy more domestic and foreign than which times, and be facing it in stream of the times. As a serious problem is becoming it as crime of violence guilt be frequent in these changes, and physical infringe property with a human life, and destroy personal is happy home, and is discomposing greatly a national life, devise countermeasure

about this, and be urgent, and will do it.

Reviewed crime phenomenon along a social change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in the multilateral sides as targeted the rape that included too important crime of violence criminal murder/burglar/sexual violence only, and stated a problem for an improvement reasonable of a crime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about this. Also, tried to treat the cause and an early side view strengthening the preventive activity that was an advance enemy in order to control it what kind of countermeasure we must devise which crime of violence guilt occurred in.

Specially, decide to leave emphasis for it to grope for the plan to solve as problems to be practically important to do how entrance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police must do it for arrests of the criminal whom crime of violence guilt occurred in than a problem of policy.

It will present a plan it is comprehensive, and to be reasonable for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ability raising about crime of violence guilt under the recognitions that were firstly important to do so as this paper does it from people so as to have wielded damage consciousness about crime of violence guilt, and national each one feels relieved, and to be able to live safely. Must rationalize the first,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to its concrete plans. The second, a criminal investigation way of the police and a system must be improved. The third, Must establish a system of a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Be more efficient by the crime that our society develops, and is increased rapidly, and see scientifically people from crimes that more study and effort are necessary in protecting it.

目 次

ABSTRACT

제 <i>1</i> 장 序 論 ··································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方法과 範圍
제2장 重要强力犯罪의 概念 및 特徵
제1절 重要强力犯罪의 概念
제2절 重要强力犯罪의 特徵
1. 生命의 剝奪(
2. 恐怖雰圍氣 造成
3. 家庭破綻의 招來
4. 國家機能의 不信 招來(
제 <i>3</i> 장 重要强力犯罪의 實態 ···································
제1절 發生 및 檢擧現況1
제2절 犯罪行爲의 特徵
제3절 犯罪者의 特徵 2:
제4절 被害者의 特徵 24

제4장 重要强力犯罪에 대한 警察搜査體制의 問題點27
제 1 절 無境界時代에 있어서 廣域搜査의 問題點27
1. 無限境界時代의 犯罪 27
2. 犯罪의 廣域化
3. 韓國的 「廣域搜査 System」實態30
4. 廣域搜查力의 不足32
제2절 捜査組織과 人事管理의 問題點33
1. 搜查組織構造34
2. 人事管理
3. 捜査要員補職・昇進 管理35
4. 教育課程 및 內容
제3절 警察 搜査方法과 制度上의 問題點 36
1. 初動搜查措置
2. 搜查資料 管理
3. 搜查本部 運營
4. 犯罪統計管理38
제4절 科學搜査體制의 問題點39
1. 우리나라의 科學搜査體系 4(
2. 科學的 鑑識體制41
3. 遺傳子情報銀行과 遺傳子鑑識의 認定42
4. 거짓말 探知機를 活用 44

제5장 警察搜査體制의 提高方案45
제 1 절 無境界時代에 있어서 廣域搜査力의 强化45
1. 廣域搜査體制의 開發45
2. 情報通信시스템의 廣域化46
3. 廣域搜査專擔機構의 新設47
4. 廣域搜查 System 改善 Model
제 2 절 搜査人力 管理의 專門化 ·······52
1. 新任搜査官 選拔方法의 多樣化
2. 人力運營 體制의 合理化53
제3절 警察搜查方法과 制度의 改善54
1. 初動措置 體制의 改善
2. 搜查資料 管理體制의 改善55
3. 搜査本部 運營의 合理化55
4. 犯罪統計 管理의 改善
5. 수사경과제 도입56
제4절 科學搜査體制의 確立 57
1. 鑑識搜査制度의 改善
2. 遺傳子 鑑識에 대한 法的 認證制度의 設置60
3. 거짓말 探知機 運用上의 改善61
제 <i>6</i> 장 結 論 ·······63
參考文獻

表 目 次

<표-1> 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
<표-2>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13
<표-3> 강도의 죄명별 검찰접수인원현황15
<표-4> 강력범죄의 발생지역별 분포16
<표-5> 강력범죄의 발생시간대별 분포17
<표-6> 강력범죄의 검거단서 및 검거시기현황18
<표-7> 흉기소지현황19
<표-8> 강도수법별 발생건수20
<표-9> 강력범죄자 연령별 구성비21
<표-10> 강력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22
<표-11> 강력범죄자 전과회수 구성비24
<표-12>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
<표-13> 강력범죄 피해자의 관계별 현황26
<표-14> 수 사 인 력31
<표-15> 강력범죄 및 비교지수31
<표-16> 외국수사경찰의 운영비교33
<표-17> 광역수사 System의 주요내용
<표-18> 광역수사System의 임무 ·························49
<표-19> 광역수사System의 장·단점50
<표-20> 지역별 지구수사대 설치 적용례51
<표-21> 우리나라에서의 수사요워 선발 기준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최근 특정범죄자에 의하여 동종 혹은 유사 강력범죄자와 이상심리자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에 따라서 경찰의 치안행정부문은 다른 어느 행정분야보다도 사회의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신속성과 탄력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있다. 현재 우리 경찰은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맞으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강력범죄가 빈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과 가정을 파괴하여 국민생활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감으로써 강력범죄 억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강력범죄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

강력범죄에 있어서 우리 경찰의 수사능력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하여 경찰과 그에 관련된 기관들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²⁾.

본 논문은 국민들로부터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게 하고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인식하에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¹⁾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이 도입에 관한 연구 -연쇄살인범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호, 2004, p.352.

²⁾ 김상철,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2-3.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강력범발생 즉시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범인은 반드시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의식을 심게 하고 강력범조사의 제반문제점을 파헤쳐 해결방안을 찾아 궁극적으로 범죄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정의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제1차적 목적을 둔다. 특히 앞으로 도입·시행되는 과학수사방식인 유전자감식과 수사, 최면수사,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등 그리고 광역수사대의 창설로시행되는 경찰의 수사활동 및 수사경과제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강력범죄의 사전억제 사후대책에 따른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硏究의 方法과 範圍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중요강력범죄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표, 즉 경찰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경찰백서,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등을 통하여 그 원인과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기존의문헌조사를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보고된연구논문들과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연구방법과 경찰관련연구기관·정부의 공식통계, 실무경험을 실무를 통한 경험에서얻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하였다.

중요강력범죄인 살인·강도·성폭력을 포함한 강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현상과 그 수사체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범죄수사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 강력범죄가 발생한 원인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측면도 다루어 봤다. 특히 수사경찰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강력범죄가 발생한 범인의 검거를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제2장에서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의 특징과 실 태를 살펴보고 각국의 중요범죄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2장에 서 연구한 일반이론과 실태를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여 봄으로 현 수사체제의 문제점을 제도상, 과학수사체제, 수사조직 또는 인사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연 구해 보았다. 제4장은 이러한 문제점의 제고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시행하고자하는 수사경과제 또는 광역수사, 유전자은행, 수사자료 관리 문제에 있어서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과학수사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 현실에 직면해 있는 중요강력범죄의 수 사 등 제3장을 통해 살펴본 문제점과 제4장에서 연구한 개선방안을 정리함으 로써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요강력사건이 경우처럼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고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초동수사를 중심으로 범죄용의자를 추적하는 기능은 주로 형사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중요 강력사건의 주무부서인 형사과의 실무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제2장 重要强力犯罪의 概念 및 特徵

제1절 重要强力犯罪의 概念

강력범죄는 통상 폭력을 동반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대인범죄를 가리키는 말이나 이것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실무 상 개념이므로 어떤 범죄를 강력범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형사사법기관별로 그개념이 달리 규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그것과도 그 개념이 상당히다른 실정이다3).

우리나라 전체범죄는 크게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된다. 검찰통계상의 분류에 따르면, 형법범죄는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형법범죄는 주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로 이루어지며, 이 중 강력범죄는 주로 폭행, 상해, 강간, 살인, 강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나라 경찰에서 분리하는 강력범은 크게 4가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살인·강도·방화·성폭력을 포함4)한 강간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청등의 통계에 산입되고 있다. 또한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는 검찰통계사무규정 및 검찰예규 등에 의하여 刑法犯 중 살인·강도·성폭력을 포함한 강간·방화·폭행·상해·공갈·협박·약취유인·체포감금죄와 특별범법 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을 강력범으로 지칭하고 있다5).

³⁾ 상게논문, p.1.

^{4) 1994}년부터 특수한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도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강력범 통계에 산입하고 있다.

⁵⁾ 김용채·김상철·오수평, 「수사 I」, 박문각, 2003, p.565.

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하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일으켜 1차적으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가하고, 2차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 생명·신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위험성이 큰 범죄, 위험성이 불특정 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강력범죄6)라고 할 수 있다.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4가지의 특징7)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범죄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범죄현장이나 피해객체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적인 여러 단서가 남게 된다.

둘째,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셋째, 특별한 강력범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범죄자에 비하여 교육수 준이나 신분 등이 낮은 편이다.

넷째, 범행의 방법이 그 범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이고 정형적 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제2절 重要强力犯罪의 特徵

중요강력범죄의 특징은 강력한 폭력을 수반하는 대인적 범죄라는 것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및 인반 공중에게 심각한 공포심·불안감·정신적 충격을 남긴다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법적 강제와 인륜적 비난을 가하여 왔다는 것이다.

⁶⁾ 일반적으로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상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폭력범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순, "민생치안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7 재인용).

⁷⁾ 김용채 외, 전게서, p.529.

앞서 강력범의 개념에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강력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중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생명의 박탈, 공포분위기 조성, 가정파탄의 초래, 국가기능의 불신 초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 다.

1. 生命의 剝奪

살인행위의 경우 이유나 동기 등 무엇이든 간에 피살자를 비롯 살인자 자신스스로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생활 중가장 비극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살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단 하나뿐인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의 정도가중대하다고 본다. 살인의 경우는 살해된 피살자만의 생명박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살자의 유가족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특히 유가족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5조와 199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8)에는 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는 자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⁹⁾.

2. 恐怖雰圍氣 造成

강도의 경우는 국민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대중적인 범죄로서 그 피해의 심각성은 매스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과거

⁸⁾ 제정 1990. 12. 31. 법률 제4590호, 개정 1993. 12. 10. 법률 제4295호.

⁹⁾ 김상철, 전게논문, pp.6-7.

의 단순강도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폭력을 휘둘러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점점 잔인성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급박한 실정이라고 본다.

강도는 일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강도 사건들이 종래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대담해지고 그 잔인성이야 말로 살인범죄 못지않게 중대한 결과를 야기 시켜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3. 家庭破綻의 招來

강도범죄가 보여 주는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재물의 취득에서 연장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잔인성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물을 탈취하거나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착수한자가 범행의 과정에서 부녀자의 정조나 그 자녀의 순결까지를 유린하는 사례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족 면전에서의 강도강간범죄는 그러한 범죄 중에서도극단적인 형태에 속한다.

가족이 주시하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형태의 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보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가정파괴범죄'라고 말하고 있다¹⁰⁾.

가정파괴범죄가 저질러지면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여기 는 이유를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범죄자가 피해자를 억압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폭력범죄나 재산범죄와 달라 피해자에게 극도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가족이 주시하고 있는 면

¹⁰⁾ 조병인, "가정파괴범죄란 용어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1991. 10, pp.26-28.

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자들은 대개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 거나 흉기 등에 의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도록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감은 다른 재산범죄나 정조침해범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흔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 다11).

둘째, 범죄자가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방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도 남을 정도에 이른다. 범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재물취득의 연장으로 강간하는 것이지만, 일단 범행이 개시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조와 명예감정을 동시에 짓밟히는 치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가정파괴범들이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양상은 실로 정상인의 상상을 초월 한다12).

셋째,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타격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해져 가정의 결속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의 강간이나 강도강간 범죄는 보통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부녀자가 강간을 당하더라도 명예에 대한 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파괴범들은 그 가족이 주시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감과 불명예감정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는 피해 가정의 유대를 악화시켜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는 가혹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파괴범들의 여성의 정조·가족의 명예감정·가정의 안정과 화목, 그리고 가정의 재물 등 4가지 영역을 동시에 침해하는 공격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단 범죄가 저질러지고 나면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여성의 정조를 특히 중요시하고 그것이 가족의 명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교적인 전통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¹¹⁾ 김상철, 전게논문, p.8인용.

¹²⁾ 조병인 외,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 p.81.

따라서 강도강간의 범죄인 경우는 피해자인 부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을 안겨 주게 된다. 즉 살인 못지않게 강도강 간 사건 또한 잔인성과 흉악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의 큰 문제로 보 아진다.

4. 國家機能의 不信 招來

가정파괴범과 같은 초강력범죄가 빈발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된다. 강도살인·강도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하면 피해회복의 불가능성과 범죄행위의 극단적인 비인간성이 사회에 주는 충격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의 치안능력을 불신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¹³⁾.

¹³⁾ 오호종, "강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10.

제3장 重要强力犯罪의 實態

범죄는 하나의 '사회현장'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회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정보화, 도시집중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제 치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무경계시대화라고도 한다. 국제화의 진전, 교통수단의 발달 등에 따라서 종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지리적인 경계라든가 사회적인 짜임이 점차로 소멸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무경계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또한 중요강력범죄의 실태에 영향을 준다고 본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범죄면에도 투영되고 있어 범죄가 광역화, 국제화, 또는 범죄형태나 범죄자의 속성이 다양화하고 있다¹⁴⁾.

여기서 각국의 중요범죄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미국에 있어서 1970년에서 1990에 이르는 동안 경찰관의 수는 70.7%가 증가하였지만 강력범죄는 78.8% 증가하였고, 폭력범죄는 147%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 당 경찰관수는 255 증가하였으나 범죄율은 1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에는 1977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 경찰관 수는 12%증가하였으나 범죄율은 67%로 증가하였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197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 당 경찰관수는 16%증가하였으나, 범죄율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경찰관의 수는 범죄율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에 범죄율이 높아질수록 경찰관 수

¹⁴⁾ 무경계화는 수사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이병곤, "무경계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p.8-9).

¹⁵⁾ Beie, Piers and Messerschmidt, James, Criminology, 3rd ed., Bouldeer, Colorado : Westview Press, 2000. p.90

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로 범죄율이 감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력범죄는 검찰통계사무규정이나 검찰예규 등에 의하면 형법범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체포·감금죄와 특별법범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범을 지칭하나 위와 같은 범죄 전부를 함께 분석하는 것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도 못하므로, 본 장에서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대하여 여러 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發生 및 檢擧現況

1. 全體 强力犯罪

<표-1>은 지난 30년간의 전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990년 11.440건에서 2003년 20,416건으로 지난 10년 간 약 2배 증가하였다. 인구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도 1990년 26.7에서 2003년 42.6으로 기간중 약 2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일시적으로 감소한 때도 있으나 대체로 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에 13,304건으로 급증하였다가 1995년에는 10,852건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소폭증가세를 유지해오다가 1998년에 15,41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1999년에는 15,633건, 2000년에는 17,780건, 2001년에는 18,480건, 2002년에는 17,759건, 2003년에는 20,4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657건 14.9% 증가하였다.

<표-1> 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16)

구분	발	생	검	거	검거율
년도	건 수	인구비	건 수	인 원	(%)
1990	11,440	26.7	10,783	17,144	94.3
1991	9,619	22.2	9,252	14,263	96.2
1992	9,675	22.2	9,784	14,963	101.1
1993	11,639	26.4	13,407	20,613	115.2
1994	13,304	29.9	13,159	18,915	98.9
1995	10,852	24.2	10,515	15,704	96.9
1996	12,155	26.9	11,547	15,229	95.0
1997	12,967	28.2	12,279	16,796	94.7
1998	15,416	32.9	14,988	21,385	97.2
1999	15,633	33.4	15,353	21,101	98.2
2000	17,780	37.6	16,003	21,422	120.4
2001	18,480	39.0	16,387	21,413	88.6
2002	17,759	36.6	17,208	25,321	96.9
2003	20,416	42.6	19,367	29,796	94.9

주: 1. 범죄분석.

- 2. 인구비는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 3. 성폭력특별법범 포함.

2. 罪名別 發生現況

강력범죄의 죄명별 증감현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성폭력(강간과 성폭력특별법위반을 포함)이 9.9%, 살인은 2.8%, 강도는 23.1% 각각 증가하였다.

¹⁶⁾ 법무부,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4, 52면.

살인은 기간중 1.8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 강간, 방화는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인은 1990년 666건에서 2003년 1,011건으로 증가하였는데, 1997년까지는 대체로 500~800건 사이에서 증감을 거듭했고 1999년에는 984건으로서 전년대비 1.9% 증가, 2000년에는 964건으로서 전년대비 2.0% 감소, 2001년에는 1,064 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 2002년에는 983건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1,011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표-2>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17)

구분 년도	합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포함)	방 화
1990	11,440	666	4,195	5,519	1,060
1991	9,619	630	2,766	5,175	1,048
1992	9,675	615	2,549	5,447	1,064
1993	11,639	806	2,876	7,051	906
1994	13,304	705	4,469	7,415	715
1995	10,852	646	3,414	6,174	618
1996	12,155	690	3,586	7,158	721
1997	12,967	789	4,282	7,120	776
1998	15,416	966	5,407	7,886	1,157
1999	15,633	984	4,712	8,830	1,107
2000	17,780	964	5,349	10,189	1,278
2001	18,480	1,064	5,546	10,446	1,375
2002	17,759	983	5,953	9,435	1,388
2003	20,416	1,011	7,327	10,365	1,713

주: 1. 범죄분석.

^{2.}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994.1.5).

¹⁷⁾ 상게서, 54면.

장도는 1974년 1,246건에서 2003년 7,327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5.9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4,19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뒤 1991년 2,766건으로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1994년에는 4,469건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1995년 3,414건, 1996년 3,586건으로 감소와 증가를 번갈아 기록하다가, 1997년 4,282건, 1998년 5,407건, 2000년 5,349건, 2001년 5,546건, 2002년 5,953건으로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에는 7,327건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다.

강간(강간 및 성폭력특별법위반 포함)은 1990년 5,519건에서 2003년 10,365 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 10,365건으로 전년대비 930건 9.9% 증가하 였다.

방화는 1990년 1,060건에서 2003년 1,713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1.7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0년에 1,06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4년 715건을 기록한 이후 별 증감이 없다가 1998년에는 1,157건으로 전년대비 49.1% 급증하였고, 1999년에 1,107건으로 4,3% 감소, 2000년에는 1,278건으로 15.4% 증가, 2001년에는 1,375건으로 7.6% 증가, 2002년에는 1,388건으로 0.9% 증가, 2003년도에는 1,713건으로 23.4% 증가하였다.

강도사범의 죄명별 검찰접수인원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난 10년간 강도는 3,832명에서 3,172명으로 17.2% 감소하였고, 강도상해는 3,718명에서 2,679명으로 27.9%의 감소를 보였다. 강도강간은 208명에서 86명으로 58.7% 감소하였고, 강도살인은 77명에서 104명으로 3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강도강간의 감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인원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도살인사범의 증가는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합쳐진 결과로서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3년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강도 49.0%, 강도상해 12.7% 증가하였고 강도 강간 25.7%, 강도살인 4.4% 감소하였다.

<표-3> 강도의 죄명별 검찰접수인원현황18)

구분	강 도	강도상해	강도강간	강도살인
1994	3,832(21.0)	3.718(17.4)	208(-52.5)	77(-28.0)
1995	2,830(-26.1)	3,059(-17.7)	108(-48.1)	96(24.7)
1996	2,743(-3.1)	2,992(-2.2)	114(5.6)	56(-41.7)
1997	3,481(26.9)	3,697(23.6)	128(12.3)	94(67.9)
1998	4,360(25.3)	4,754(28.6)	89(-30.5)	136(44.7)
1999	3,626(-17.1)	3,776(-20.6)	82(-7.9)	121(-11.0)
2000	2,901(-20.0)	3,615(- 4.3)	88(-7.3)	117(-3.3)
2001	2,767(-4.6)	2,828(-21.8)	75(-14.8)	97(-17.1)
2002	2,129(-23.1)	2,382(-15.7)	90(20.0)	140(44.3)
2003	3,172(49.0)	2,679(12.7)	86(-25.7)	104(-4.4)

주 : 1. 대검찰청 행정통계.

강력범죄는 국민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치안질서를 기저에서부터 파괴시키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 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 안은 전년대비 백분율.

^{3.} 강도는 해상강도와 특가법위반(강도) 포함.

¹⁸⁾ 상게서, 56면.

제2절 犯罪行爲의 特徵

1. 發生地域

2003년의 강력범죄 발생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표-4>와 같이 각 죄명별로 대도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살인은 42.4%, 강도는 63.3%, 강간은 49.0%, 방화는 44.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특히 강도는 대도시 지역에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살인, 강간, 방화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표-4> 강력범죄의 발생지역별 분포(2003년)¹⁹⁾

구 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도시이외
살 인	1,011(100)	429(42.4)	463(45.8)	119(11.8)
강 도	7,327(100)	4,641(63.3)	2,462(33.6)	224(3.1)
강간(성폭력포함)	10,365(100)	5,082(49.0)	4,528(43.7)	755(7.3)
방 화	1,713(100)	758(44.2)	794(46.4)	161(9.4)

주 : 1. 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2. 發生時間

<표-5>는 2003년도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시간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살인에 있어서는 밤(34.4%), 오후(15.3%), 오전(10.7%)의 순이고, 강도는

¹⁹⁾ 상게서, 57면.

밤(37.2%), 오후(15.5%), 새벽(11.1%)의 순이며, 장간은 밤(33.3%), 오후(13.9%), 새벽(10.2%)의 순이고, 방화는 밤(40.5%), 오후(15.6%), 오전(9.3%)의 순으로 나타나 강력범죄의 발생시간대는 대개 야간에 집중되고 있으나 새벽과 오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강력범죄의 발생시간대별 분포(2003년)20)

구분 죄명	계	새 벽	아 침	오 전	오후	저 녁	밤	미 상
살 인	1,011	79	28	108	155	74	348	219
	(100)	(7.8)	(2.8)	(10.7)	(15.3)	(7.3)	(34.4)	(21.7)
강 도	7,327	812	213	571	1,138	332	2,728	1,533
	(100)	(11.1)	(2.9)	(7.8)	(15.5)	(4.5)	(37.2)	(20.9)
강 간	10,365	1,054	560	646	1,438	575	3,455	2,637
(성폭력포함)	(100)	(10.2)	(5.4)	(6.2)	(13.9)	(5.5)	(33.3)	(25.4)
방 화	1,713	130	50	160	268	107	694	304
	(100)	(7.6)	(2.9)	(9.3)	(15.6)	(6.2)	(40.5)	(17.7)

주: 1. 범죄분석.

- 2. () 안은 백분율.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 4. 새벽:04:00~06:59, 아침:07:00~08:59, 오전:09:00~11:59 오후:12:00~17:59, 저녁:18:00~19:59, 밤:20:00~03:59

3. 檢擧端緒 및 檢擧期間

<표-6>은 2002년도 강력범죄의 죄명별 검거단서 및 검거기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검거단서에 대하여 보면 방화죄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의 비율이 높고 강간죄는 피해자 신고의 비율이 높은 바, 특히 강간의 경우 피해자 신고가 검거단서 중 55.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친고죄인 강간죄의 특

²⁰⁾ 상계서, 58면.

성에 기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 검거기간을 보면 범죄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거된 건수의 비율은 살인이 77.2%, 장도가 47.1%, 장간이 65.0%, 방화가 8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초동단계에서 집중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특히 요망된다고하겠다.

<표-6> 강력범죄의 검거단서 및 검거시기현황(2003년)²¹⁾

7	죄 명	살 인	강 도	강 간	방 화
구	분			(성폭력포함)	. = ()
	계	1,049(100)	7,202(100)	9,555(100)	1,561(100)
검	피해자신고	278(26.5)	2,788(38.7)	5,277(55.2)	388(24.9)
거	제 3자 신 고	154(14.7)	150(2.1)	219(2.3)	105(6.7)
단	현행범체포	281(26.8)	1,440(20.0)	3,191(33.4)	761(48.8)
서	수 사 활 동	161(15.3)	1,880(26.1)	541(5.7)	126(8.1)
별	자 수	62(5.9)	53(0.7)	34(0.4)	36(2.3)
	기 타	113(10.8)	891(12.4)	293(3.1)	145(9.3)
	계	1,049(100)	7,202(100)	9,555(100)	1,561(100)
	1 일 이 내	810(77.2)	3,392(47.1)	6,211(65.0)	1,289(82.6)
검	3 일 이 내	- (-)	2(0.0)	7(0.1)	- (-)
거	10일 이 내	- (-)	1(0.0)	1(0.0)	- (-)
기	1개월 이내	64(6.1)	1,208(16.8)	896(9.4)	52(3.3)
간	3개월 이내	72(6.9)	1,227(17.0)	1,040(10.9)	89(5.7)
별	6개월 이내	38(3.6)	554(7.7)	559(5.9)	72(4.6)
	1 년 이 내	29(2.8)	453(6.3)	439(4.6)	36(2.3)
	1년초과	36(3.4)	365(5.1)	402(4.2)	23(1.5)

주 : 1. 범죄분석.

2. () 안은 백분율.

²¹⁾ 상게서, 59면.

4. 凶器所持 現況

<표-7>은 살인과 강도에 있어서의 흉기소지 및 준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7> 흉기소지현황(2003년)²²⁾

구 분	죄 명	살 인	강 도
	계	1,049 (100)	7,202 (100)
	소 지 무	446 (42.5)	4,862 (67.5)
	흉 기 소 지	603 (57.5)	2,340 (32.5)
	총 기	19 (1.8)	29 (0.4)
흉기소지상황	도 검	415 (39.6)	1,432 (19.9)
	약 물	19 (1.8)	22 (0.3)
	둔 기	49 (4.7)	280 (3.9)
	기타	101 (9.6)	577 (8.0)
	계	603 (100)	2,340 (100)
흉기준비상황	사 전 준 비	200 (33.2)	731 (31.2)
	피 해 자 것 사 용	51 (8.5)	217 (9.3)
	기 타	352 (58.4)	1,392 (59.5)

주 : 1. 범죄분석.

- 2. () 안은 백분율.
- 3. 강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강도강간 등) 포함.

범행중 흉기를 소지한 비율은 살인이 57.5%, 강도가 32.5%이며, 사용흉기의 종류는 두죄 모두 도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살인은 39.6%, 강도는 19.9%가 도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기준비 현황을 보면 살인의 경우 사전준비를 한 경우가 33.2%, 피해자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8.5%이며 강도의 경우에는 사전준비를 한 경우가 31.2%,

²²⁾ 상게서, 60면.

피해자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의 비율도 커서 그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5. 强盗手法别

<표-8>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강도수법별 발생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8> 강도수법별 발생건수(1999년~2003년)²³⁾

구분 년도	계	침입강도	노상강도	차내강도	기 타
1999	4,995	1,417	1,237	206	2,135
	(100)	(28.4)	(24.8)	(4.1)	(42.7)
2000	5,529	1,626	1,361	209	2,333
	(100)	(29.4)	(24.6)	(3.8)	(42.2)
2001	6,180	1,826	1,333	216	2,805
	(100)	(29.5)	(21.5)	(3.4)	(45.3)
2002	6,240	1,393	1,393	181	3,273
	(100)	(22.3)	(22.3)	(2.9)	(52.5)
2003	7,706	1,733	1,619	217	4,137
	(100)	(22.5)	(21.0)	(2.8)	(53.7)

주 : 1. 범죄분석.

- 2. () 안은 백분율.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1999년에는 침입강도 28.4%, 노상강도 24.8%, 차내강도 4.1%였는데 2001년에는 침입강도 29.5%, 노상강도 21.5%, 차내강도 3.4%로 약간의 변화를 엿볼수 있다. 2002년은 침입강도는 감소함에 비해 노상강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²³⁾ 상게서, 61면.

있으며, 2003년에는 침입강도 22.5%, 노상강도 21.0%, 차내강도 2.8%로 나타 났다.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하면, 노상강도를 비롯한 모든 수법의 강도범죄 가 다소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구성비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犯罪者의 特徵

1. 年齡別 構成

<표-9> 강력범죄자 연령별 구성비(2003년)²⁴⁾

죄 명 년 령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포함)	방 화
계	1,021	5,312	9,815	1,426
/1	(100)	(100)	(100)	(100)
1 9 세 이 하	17	1,371	915	56
	(1.7)	(25.8)	(9.3)	(3.9)
20 ~ 25 세	84	1,031	1,311	67
	(8.2)	(19.4)	(13.4)	(4.7)
26 ~ 30 세	95	697	1,271	110
	(9.3)	(13.1)	(12.9)	(7.7)
31 ~ 40 세	295	950	2,729	466
	(28.9)	(17.9)	(27.8)	(32.7)
41 ~ 50 세	307	437	1,936	463
	(30.1)	(8.2)	(19.7)	(32.5)
51 ~ 60 세	93	97	666	124
	(9.1)	(1.8)	(6.8)	(8.7)
60 세 이 상	46	22	292	39
	(4.5)	(0.4)	(3.0)	(2.7)
미 상	84	707	695	101
	(8.2)	(13.3)	(7.1)	(7.1)

주 : 1. 범죄분석.

^{2. ()} 안은 백분율.

²⁴⁾ 상게서, 62면.

<표-9>는 강력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소년의 비율은 강도가 25.8%로서 매우 높은 반면, 방화는 3.9%, 살인은 1.7%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살인은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30.1%, 방화는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32.7%, 강간은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27.8%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教育程度別

강력범죄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표-10>과 같다.

<표-10> 강력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2003년)25)

죄 명 학 력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	방 화	
계	1,021	5,312	9,815	1,426	
71 1	(100)	(100)	(100)	(100)	
초등학교이하	209	355	1,102	326	
	(20.5)	(6.7)	(11.2)	(22.9)	
중 학 교	184	1,076	1,460	269	
	(18.0)	(20.3)	(14.9)	(18.9)	
고 등 학 교	359	2,446	3,865	509	
	(35.2)	(46.0)	(39.4)	(35.7)	
대학교 이상	131	575	2,401	159	
	(12.8)	(10.8)	(24.5)	(11.2)	
미 상	138	860	987	163	
	(13.5)	(16.2)	(10.1)	(11.4)	

주: 1. 범죄분석.

^{2. ()} 안은 백분율.

²⁵⁾ 상계서, 63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의 비율은 살인이 38.5%, 강도가 27.0%, 강간 (성폭력포함)이 26.1%, 방화가 41.8%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 소지자보다 오히려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강도에 있어서는 46.0%, 강간에 있어서는 39.4%라는 큰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학교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토록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3. 前科回數別 構成

<표-11>은 강력범죄의 전과회수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초범자의 비율은 2003년에 살인이 28.6%, 강도가 27.1%, 강간(성폭력포함)이 32.5%, 방화가 23.4%로서 2002년의 살인 27.1%, 강도 25.1%, 강간 29.9%, 방화 25.1%에 비하여 방화를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 그러나 전과가 1범, 2범, 3범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에 전과 4범 이상의 전과다수자의 비율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예컨대 살인의 경우에 있어 전과 1범은 12.7%, 전과 2범은 10.7%, 전과 3범은 7.5%로 낮아지고 있고, 강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과 1범은 11.9%, 전과 2범은 8.9%, 전과 3범은 7.7%로 낮아지고 있으며, 강간의 경우도 전과 1범은 15.8%, 전과 2범은 10.1%, 전과 3범은 7.5%로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과 4범 이상은 살인이 31.4%, 강도가 29.9%, 강간이 26.3%, 방화가 34.2%로서 2002년도의 살인 31.2%, 강도 32.0%, 강간 27.9%, 방화 32.2%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과자의 재범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정정책과 출소자에 대한 재활활동에 더욱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표-11> 강력범죄자 전과회수 구성비(2003년)²⁶⁾

죄 명 전 과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	방 화
계	1,021	5,312	9,815	1,426
All	(100)	(100)	(100)	(100)
전 과 무	292	1,440	3,188	333
	(28.6)	(27.1)	(32.5)	(23.4)
1 범	130	633	1,548	184
	(12.7)	(11.9)	(15.8)	(12.9)
2 범	109	475	992	164
	(10.7)	(8.9)	(10.1)	(11.5)
3 범	77	409	737	139
	(7.5)	(7.7)	(7.5)	(9.7)
4 범 이 상	321	1,589	2,579	487
	(31.4)	(29.9)	(26.3)	(34.2)
미 상	92	766	771	119
	(9.0)	(14.4)	(7.9)	(8.3)

주 : 1. 범죄분석.

2. () 안은 백분율.

제4절 被害者의 特徵

1. 性別・年齢別 構成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 연령별 구성현황을 보면 <표-12>와 같다.

남자의 경우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살인에서는 31.6%, 강도에서는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강간(강제추행 포함)에서는 21세 이상 30세 이

²⁶⁾ 상게서, 64면.

하가 29.1%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자의 경우 살인에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31.5%, 강도에서는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34.9%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강간에서는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18.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12>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03년)²⁷⁾

최명 연령	7	비	살	인	강	도	방	화	강 (성폭력	간 역포함)
≟ L.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3,301	9,856	373	308	1,944	2,492	599	366	385	6,690
6세 이하	11	150	7	11	2	_	1	1	1	138
12세 이하	44	464	2	4	15	14	_	3	27	443
15세 이하	151	334	2	3	136	28	_	1	13	302
20세 이하	284	1,335	7	7	252	214	2	4	23	1,110
30세 이하	568	3,430	51	35	364	868	41	21	112	2,506
40세 이하	948	2,084	118	86	541	673	179	101	110	1,224
50세 이하	806	1,418	106	97	401	469	219	147	80	705
60세 이하	318	381	48	32	152	140	101	43	17	166
60세 초과	171	260	32	33	81	86	56	45	2	96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강력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연령층임을 알 수 있으며, 6세 이하도 살인에서 2.6%, 강간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어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²⁷⁾ 상계서, 65-66면.

2. 被害者와 犯罪者의 關係

<표-13>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살인에서는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가 22.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강도에서는 타인인 경우가 64.6%를 차지하고 있다. 방화에서는 타인인 경우가 24.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친족 관계인경우도 17.3%를 차지하고 있고, 강간에서는 타인인 경우가 56.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웃인 경우도 13.5%를 차지하고 있다.

<표-13> 강력범죄 피해자의 관계별 현황(2003년)²⁸⁾

죄 명	계	살 인	강 도	방 화	강 간
연 령	,,		0	o ,	(성폭력포함)
계	17,574	1,021	5,312	1,426	9,815
국 가	119	-	-	102	17
공 무 원	15	1	5	5	4
직장상사동료	383	37	23	31	292
친 구 애 인	578	138	73	69	298
친 족	729	232	46	246	205
이 웃	2,033	183	337	186	1,327
타 인	9,528	188	3,432	355	5,553
기 타	2,463	150	669	319	1,325
미 상	1,726	92	727	113	794

²⁸⁾ 상계서, 66면.

제4장 重要强力犯罪에 대한 警察搜查體制의 問題點

제1절 無境界時代에 있어서 廣域搜查의 問題點

1. 無限境界時代의 犯罪

대중매체나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가들의 견해에 의해 만들어지는 범죄의 단순한 이미지나 법률적 범주로써 설명되는 범죄의 정의를 통해서는 범죄의 복합적인 사회적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 범죄학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고정 관념적인 이미지와 가치적 측면을 떨쳐버리고 객관적으로 범죄를 설명하려는 것이다29).

범죄학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대 범죄학의 기원은 1760년-1820년 고전학파와 1820년-1890년의 실증철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criminology'라는 용어는 라틴어 'crimen'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재판, 비난혹은 죄를 의미하는 'accusation', 혹은 규범위반을 뜻하는 'offinse'라는 의미이다.

비록'criminologist'라는 용어가 1850년대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criminology' 자체는 1885년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Raffaele Garofalo의 범죄 연구에서 정의된 바 있다³⁰⁾.

1890년에서 1915년의 진보적 시대 동안 미국에서 대학에 범죄학 학과를 설립하면서 범죄학은 여러 학문에 걸친 분야가 되었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 또한 정치학, 법학, 경제학,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생물학, 지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

²⁹⁾ 이병곤, 전게논문, pp.12-13.

³⁰⁾ Piers Beime, Inventing criminologist: Essays on the Rise of Homo Criminali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p.233-238

되고 있다. 범죄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범죄의 4가지 사회학적 정의가 있다.

첫째,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의 범죄이다31). 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의 범죄에 대하여 Thorstin Sellin은 '기본 연구 단위나 범죄학적 연구의 요소들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의 근본적인 준거를 모독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요소들에 대한 본질적 특성과 보편적으로 가정되는 요인들의 특성에 근거한 자신만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범죄학 연구의 기본단위는 행동규범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 규범에는 관습, 종교, 전통 형법과 같은 다른 유형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적 유해성으로서의 범죄이다³²⁾. 사회적 해악으로서의 범죄는 Edwin H. Sutherland에 의해 범죄가 범죄로서의 아니라 사회의 해악으로 분류되면서 부각되었으며 범죄의 근본적인 특성은 국가에 대한 반작용에 대해마지막 수단으로 처벌을 가하거나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국가에 의한 금지되는 행동이다. 범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법학자들에의해 제시되는 두가지 이론적 기준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동에 대한 법률적기술'과 '그 행동의 처벌에 대한 법률규정'이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위반으로서의 범죄로써 인권침해로서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권이라는 용어로 정의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33). 그 기원은 1975년 Herman과 Julia Schwending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Schwendinger는 두가지 유형의 인권을 주장하였는데 '생명과 관련되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 자유로운 연설, 좋은 교육 등과 같은 인간활동과 관련되는 인 권'이 그것이다. 또한 Schwendinger는 사회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범죄

³¹⁾ 이병곤, 전게논문, p.14,참조.

³²⁾ Edwin H. Sutherland, White Collar Crim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83, p.46.

³³⁾ Julia Schwendinger and Herman Schwendinger, Defender of Order or Guardians of Herman Right?, in Ian Taylor, Paul Walton, and Jock Young, ed., *Critical Criminology*, London: Rontledge and Kegan Paul, 1975, p.137.

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일탈행동으로서의 범죄이다34). 일탈행위로서의 범죄를 예를 들어보면은행 강도, 정신적 질병 등이 일탈적인 사회로 볼 수 있다. 일탈은 평범한 것이며 모든 일탈 행동은 잠재적으로 법의 제재에 지배를 받게 되며 일탈행동에의해 위반되는 규범이나 기준들은 매우 다양하다. 일탈의 인식은 일탈로서 정의된 어떤 행동을 행하는 사람은 모르며 오히려 보는 사람이 인식하게 된다.이것은 범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질문을 제기한다. 즉 누가 일탈을어떻게 왜 정의할 것인가, 개인의 일탈행동이 법적인 제재에 의해 지배 될 때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떤 일탈행동은 범죄로 정의 되고 또 어떤 일탈 행동은 범죄로 정의되지 않는가에 의문을 갖는다.

2. 犯罪의 廣域化

무경계시대의 범죄의 광역화, 몇년 전에 소위 지존파 엽기적 살인사건, 온보현의 암매장 사건, 어린이와 유부녀 유괴사건, 신창원의 탈옥사건 등 국민들에게 크나큰 불안을 주는 특이하고 중요한 광역범죄가 두드러지게 눈에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 수사의 반성과 교훈을 근거로 하여 경찰청에서는 광역 중요범죄수사의 본래의 자세로서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를 하는 합동수사나 공동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개의 광역중요범죄의 수사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방경찰청의 경계부근의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그 테두리를 넘어서 협력하여 광역적인 수사에임하기 위해 광역 초동수사체제의 정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시책을 제도로서 추진하기 위에서는 현행경찰법의 운용으로는 법적인 구조로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어 광역범죄에 관해 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수사를하기 위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³⁴⁾ Colin Snmner, The Sociology of Deviance : An Obituary, New York : Continuum, 1994, pp.197-198.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는 광역에 걸치는 중요 강력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온갖 범행 수법과 잔인함, 그리고 완전범죄를 노린치밀하고 사전준비를 통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광역화는시대가 변화할수록 연속적으로 행해진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5월 25일 과천시에서 부모를 살해 토막 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자식인 이은석씨로 그는 부모를 살해한 후 토막을 내어 경기도 안양시의 한적한 개천가나 쓰레기장 등에 내다버렸다. 이러한 살인사건들은 앞서 살펴본 바가 있다. 이러한 사건과 유사한 무경계시대의 범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사카에서 「大훈련사」에 의한 사건이 있었다. 남녀 4명이 오사카에서 살해되어 나가노현에서 매장된 사건이 있었고 또 후꾸 오까의 미용사가 살해되어 토막이 난 채, 구마모도까지 운반되어 쓰레기장이 나 개천가에 내다버린 사건도 발생하였었다. 이러한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 럼 부 현에 있어서 단기간에서의 연속적인 범행이나 피해자를 다른 부 현으로 납치하여 살해하고 사체나 증거물을 타 부현에 내다버린다고 하는 광역화된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3. 韓國的 「廣域搜查 System」實態

(1) 韓國 搜查警察 組織 및 人力 現況

한국 수사경찰조직을 살펴보면 서울·부산·경기 외 11개 지방청, 수사-형사과가 미분리되어 있는 실태이며 전국 233개 경찰서 중 161개 서, 수사-형사과 또한 미분리 상태이다. 제주 외 13개 지방청에 광역수사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4개청에서 광역수사대외 수사(항사)과 소속 외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4>는 수사인력에 대한 각 지역의 통계다.

<표-14> 수 사 인 력³⁵⁾

구	분	계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	1	17,229	161	4467	1732	901	885	407	2634	567	437	1038	648	1261	905	1006	180
경취	발청	161	161		•	•	•	•		•	•		•	•	•	•	•
지방청 (지능	· 경찰서 · 경제)	8751	•	2253	823	440	468	174	1449	295	237	539	320	624	500	539	90
지방청	광역 수사대	590	•	145	50	41	39	23	64	31	21	40	30	43	33	30	0
외근	형사 외근	418	•	106	31	27	36	16	43	22	14	21	20	19	25	22	16
	발서 외근 ·폭력)	7,309	•	1963	828	393	342	194	1078	219	165	438	278	575	347	415	74

다음 <표-15>를 통하여 강력범죄 및 비교지수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15> 강력범죄 및 비교지수³⁶⁾

(단위 : 명)

구분	계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력 범죄	15,465		3935	1126	703	886	367	3201	444	443	1033	415	1147	721	803	241
비교 지수	1.7		1.8	1.2	1.5	2.1	1.6	2.7	1.6	2.2	2.0	1.3	1.8	1.8	1.7	2.7

(2) 우리나라에서 주요 强力事件 발생시 對應하고 있는 System

우리나라에서 주요 강력사건 발생시 대응하고 있는 System은 예컨대 살인, 연쇄강도 등이 발생하면, 112 신고를 통한 접수를 함으로 지구대의 출동을 통

비교지수 : (강력범죄 : 건) ÷ (광수대 + 수사외근 + 경찰서 형사 수 : 명)

³⁵⁾ 수사경찰관의 약11%가 지방청 소속임(뉴욕 시경은 78%, 동경 경시청은 37%)

³⁶⁾ 강력범죄 : '03년도에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범죄

[⇒] 연간 외근형사 1인당 담당 사건수는 경기·제주가 부산의 2.25배

해 현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찰서 강력반(당직반) 출동을 통하여 초동수사와 계속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방청 강력계장 및 외근형사를 투입하여 필요시에는 직접 사건을 관여하여 수사한다. 지방청 광역수사대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등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

4. 廣域搜查力의 不足

점차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들을 다루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조직과 법제도의 정비,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무경계화 하고 있는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제 및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의 발생률은 외국과 비교하여 볼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 율이 점차 우려할 정도로 심각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이나 범죄의 특성에 기초한 기존의 경찰수 사 방법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에 확실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찰업무의 과학화, 경찰 종합정보 체제화, 경찰의 정보화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검색은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장소가 광역화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작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정보의 과다한 수집에 대한 규제 장치도 고려되어야 한다37).

³⁷⁾ 이병곤, 전게논문, pp.75-76.

제2절 搜査組織과 人事管理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수사조직·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외국의 수사경찰 운영을 표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표-16> 외국수사경찰의 운영비교

Ę	국 가	운 용 현 황
		*형사시보(investigator) : 일반경과 3년 이상 근무 후 시험통과 되어야 함
	워싱턴	*형사시보 최소 5년 근무 후 형사시험 자격 부여
미	D.C.	*형사(detective) : 형사시보 합격 후 최소 1년간 현장훈련 거쳐야 함
	D.C.	*형사반장시험을 거쳐 경위로 승진시 순찰부서로 전출가능
국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금년 중 경위·경감 계급 신설예정
	시카고	*보수(기본급 및 시간외 근무)를 일반경찰보다 높게 지급, 혜택부여
	L.A.	*일반부서 4년이상 경력자중 시험통과 후 인터부와 면접을 거쳐 형사가 됨
		*수사경찰관은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선발
27	랑스	*근무성적, 연한, 상위자의 퇴직 등에 따라 승진
	- 0 —	*검거활동 및 조사 업무에 전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근무배치 없음
		*수사경찰 자격요건
		· 순사(순경), 순사장(경장) : 30세 이하
€ 6	! 본	·순사부장(경사) : 35세 이하
		・실무경험연수 : 1년 이상
		*형사작업수당, 감식작업수당, 검시작업수당, 긴급호출 야간처리 작업수
		당 등 각종 수당이 많음 *일반 예방경찰에서 3~4년 복무 후 별도의 선발절차를 걸쳐 전문화과정
		*할만 예정경절에서 3 4년 국구 후 월도의 선물절차를 설쳐 선문화과정 수료 후 배치
	: 61	
독	을 일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근무시간은 8시간
		※ 일반예방 경찰보다 수사간부 경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승진
		기회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가 빈번한 미국의 워싱턴 D.C.를 비롯하여 시카고, LA를 중심

으로 프랑스,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는 일본과 대륙법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에 대하여 수사경찰의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1. 搜查組織構造

앞서 살펴본 우리경찰은 광역경찰기능의 약화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는데 지방경찰제로의 전환으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광역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의 약화현상이라고 하겠다³⁸⁾.

우리 경찰은 오랜 관할위주의 체질때문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경 찰제에 의해 경찰의 일부업무를 일임했을 경우에는 공조수사체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³⁹⁾. 또한 공조수사에 대한 규정도 공조수사법이 아니라 하위규범인 경찰청훈령⁴⁰⁾및 예규⁴¹⁾가 최고의근거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실시와 함께 공조수사규정의 법제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절충형의 자치경찰제도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고유의 업무범위인 국가경찰사무와 지방경찰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되는데 이에 따른 수사권 배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人事管理

범죄수사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수사경찰을 지원하고 이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되고 지속적인 교육훈

³⁸⁾ 이황우, "지방경찰제의 도입모형", 「경찰행정」, 1998. 2, p.7.

³⁹⁾ 황정익, "자치경찰에 대비한 광역수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보」, 1998. 11, p.262.

^{40) &#}x27;수사긴급배치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0. 10. 26. 개정. 경찰청훈령 제332호).

^{41) &#}x27;범죄수사규칙'(2002. 10. 29. 개정. 훈령 제384호)

련과 경험 축척을 통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식·수법·강력 등 수사 전문부서의 수사요원에 대한유인책이 전무하였고 고된 근무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근무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택하여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상부의 임명에 의해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진 경우도 많다고 본다.

이처럼 수사부서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捜査要員補職・昇進 管理

경찰인력은 일정한 직책에의 생명은 그 직급에 맞는 계급만이 기준이고 그 직책에 대한 전문적 배경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요원 보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수사요원관리규칙42' 제8조의 보직관리조항을 보면, ① 수사요원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간 이동시 수사부서 배치, ②소속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수사요원을 타부서에 전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 규정으로 수사요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규정대로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수사경찰의 자질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최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와 형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수사요원 선발심사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수사의 능률과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여 전문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실제 인사운영에 있어서 민원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부조리 발생을 비롯 보직순환 등의 이유로 수사요원들이 수사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전보되는 사례 들 때문에 전문화가 저해되고 있다.

수사경찰 분야의 경우 실무상의 과중한 업무로 승진시험에 투자할 시간적

^{42) 1994. 7. 31.} 경찰청 훈령(예규) 제128호, 2000. 4. 1. 개정 경찰청 훈령 제301호.

여유가 없는 실정이고 징계 등 책임 사유가 빈발하며 이를 감안한 탄력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결국 수사경찰의 사기저하 및 질적인 향상에 있어 거대한 장애라고 볼 수 있다.

4. 教育課程 및 內容

교육과정 및 내용에 있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교육과정이 업무수행에 큰도움이 되지 못한다거나 교육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점인데 이런 문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관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운영 전반에 있어 교과과정의 수립·교재개발·교육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미비하다는 데있다. 특히 실무교육과정은 교육기간에 비하여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며 대부분 강의에 의존하므로 현장실습등이 소홀하다는 것이다43).

현행 수사실무교육이나 수사전문화교육, 수사지휘과정은 계급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교육생의 경찰경력·수사경력·나이·학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강의하는 규수나 전문가가 강의하는데 있어 교육수준의 설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警察 搜查方法과 制度上의 問題點

1. 初動搜查措置

초동수사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장에 있는 증거물 또는 참고인 · 증

⁴³⁾ 정기용. "경찰수사체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26-28.

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긴급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는 발생최초에 이루어지는 수사로서 수사에 깊은 지식과 경험이 없는 수사관은 현장의 참혹한 상태에 당 황하여 수사의 정석을 그르치거나 실수하는 수도 있다.

대부분의 초동수사나 현장보존은 파출소 근무자가 담당하는데 국민들은 민생치안의 최 일선을 맡고 있는 파출소 근무자의 초동수사 형태를 들어 경찰의자세를 평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때의 초동수사나 현장 보존이 잘못되면,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능력자체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잘못되었을 경우 범인의 즉시 검거하지 못하거나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력범죄, 중요강력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2. 搜查資料 管理

성공적으로 끝난 특정사건의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능력의 결함으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이 어렵게 수사를 끝낸 관련 서류를 일괄 검찰에 보내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면 의견서 정도는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지만 수사도중에 용의자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관련 기록이라고는 경찰서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더욱이 특정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다른 부서로 전근이라도 가면 경찰에는 관련 자료가 전무하게 된다.

수사가 실패한 경우 해결된 다른 사건들보다 그 기록이 더욱 철저히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문책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우려 때문에 수사 관들이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3. 搜查本部 運營

수사본부에서는 범인검거나 사건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사기록관리는 소홀한 상태로 수사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시 수사기록의 작성미흡으로 인한증거불충분으로 유죄의 증명을 못하거나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요원을 차출하여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본부장은 대부분 범죄발생지 경찰서장이 관장하는 까닭에 명령의 침투가 잘 안되며 수사관 각자가 공명심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를하는 등 수사원칙을 준수치 않아 수사의 실패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44).

수사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인원이나 장비, 예산 등의 부족은 수사를 함에 있어 문제를 갖는다. 신속한 기동력의 부족과 수사요원 및 수사 활동비 부족 등을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 중요강력범죄는 보도의 시사성으로 인해 사건이 과대확장 보도됨으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로 인하여 관계 상급기관의 지나친 관심표명 때문에 수사지휘자들로 하여금 보고에 치중케 하여 사건수사의 지휘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犯罪統計管理

어떤 범죄가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범죄사건에 관한수사기관의 통계분석이 필요하며 그 통계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암수범죄가 내포되어 있어 정확한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수사기관에 아예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45). 암수범죄가

^{44) &#}x27;수사본부운영규칙'(2002. 6. 20. 예규 제305호).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피해자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거나 범죄를 신고하여 공표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경찰·검찰의 출석요구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피하려는 것이며 현실의 형사정책에 반대하거나신고를 하여도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력을 느끼게 되어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나 기초생활질서관련 범죄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할수 있다. 단속의 경우 강력히 실시하면 범죄발생률이 늘어나고 단속을 소홀히했을 경우 사건발생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만약 이를 근거로 업무평정상의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단속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지발생건수가 감소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자체가 감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로 발생하는 암수범죄는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범죄자의 검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수사의 큰 지장을 준다고 보여진다.

제4절 科學搜査體制의 問題點

현대사회의 문명이 날로 발달하고 인간의 생활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 나라의 범죄수법도 날로 치밀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그 수법이 날로 흉폭해질 뿐 아니라 지능화하고 있고 그 숫자도 날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사회분위기는 더 이상 강압적 수사방법

⁴⁵⁾ 암수범죄란 용어는 일본의 검사인 Shigema Oba(1908)가 그의 독일어 논문에서 영어의 'Dark number(양적 개념으로서의 암수, Dunkelzahl)'를 'Dunkelziffer(어두운 숫자모양 내지 번호 매김의 의미)'로 잘못 번역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현재 독일에서는 오히려 暗域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pp.28-29).

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수용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방편의 하나로 수사의 과학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 우리나라의 科學搜查體系

한 나라의 과학수사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르게 계승되고 변천되어 왔으므로 어떤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1946년에 법무국행형과 및 경기도 경찰부에 각각 예속되어 있던 지문계를 통합하여 경찰부수사국에 감식 과를 설치, 지문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 경기도 경찰부법의·이화학실과 형사사진실을 통합하여 감식과와 별도로 법의학실험소를 설치, 변사체 해부 등을 관장하면서 시작되었다⁴⁶⁾.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11월에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하여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 이화학계, 지문계를 설치하였으며, 이어서 1955년 3월에 내무부 소속으로 독립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감식사무분야를 범죄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켰다47).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부48), 9과49)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검, 병리, 혈청, 유전자, 형사사진, 생물, 마약, 독물화공, 문서, 성문 차량, 약학 등 종합적인 감정·감식업무를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적인 종합적 감정기관이다.

또한 검찰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와는 별도로 1978년에 국내 처음으로 도입

⁴⁶⁾ 남궁오, "과학수사체제의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6.

⁴⁷⁾ 이문호, "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 「검찰」통권 제111호, 대검찰청, 2000, pp.40-41.

⁴⁸⁾ 법의학부, 법과학부로 나뉜다(남궁오, 전게논문, p.37).

⁴⁹⁾ 법의학과, 생물학과, 범죄심리학과, 문서사진과, 약독물과, 마약분석과, 화학분석과, 물리분석과, 교통공학과(남궁호, 상게논문, p.37).

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과학수사업무를 시작했으며 1984년엔 과학수사운 영과를 신설, 1986년 4월에 문서감정실을 1989년 9월에는 형사사진실과 음성 분석실을 신설하고 1991년 8월에는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여 2과 체제로 운영하는 등 과학수사의 면모를 부각시켜왔다.

우리나라 1998년 2월에 와서는 과학수사운영과와 과학수사지도과를 통합하여 과학수사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서는 심리분석, 유전자, 마약, 문서감정, 음성분석, 형사사진 등 6개 분야에서 감정·감식업무를 하고 있는데 심리분석과 유전자감식은 국내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마약감식은 검찰이 마약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관계로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을 통하여 과학수사중 감식체제에 관련된 부분과 유전자 감식,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科學的 鑑識體制

최근에 와서 범죄가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며 기동화 되는 등의 특성상 종래 진술위주의 수사가 인권침해의 여지와 진술의 불확실·번복 등으로 사건해결 의 혼미를 초래하여 국민으로부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된 점을 인식할 때 과학의 확실성과 유용성을 감식에 적용하는 과학적 감식이 수 사력 강화의 첩경이다.

현장감식은 아직 감정에 이르기 전에 범죄가 행하여진 장소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장소에 임하여 현장 및 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자료에 대한 관찰·사진촬영·지문채취 등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며 또한 범죄와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자료를 합리적으로 수집·채취하여 수사 자료로 하고 범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수사 활동이다50).

강력사건을 접하다 보면 초동수사에서의 신속하고도 과학적인 현장 감식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경찰관들이 공감하면서도 실무에서는 대개가 사건발생지 파출소로 신고 되어 형사과 감식요원 등 전문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먼저 현장에 임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가장 중요한 초동수사 활동인 현장보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재 형사과에 소속 되어 있는 감식요원51)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비교적 기본적인 감식 기술만 습득한 후 전문적인 감식교육이나 직무교육 등이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종 첨단장비 사용법을 숙지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실제로 첨단장비의 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등 아직도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숙한부분이 있는 실정이다52).

3. 遺傳子情報銀行과 遺傳子鑑識의 認定

우리나라는 과거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을 포함한 강간은 매년 지속적이고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문의 채취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정보은행은 DNA검사기술을 이용하여 강력범죄의 전과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유전자형을 입력·관리하며 범인지목의 단서가 없는 미제사건에 대하여 용의자

⁵⁰⁾ 김상철, 전게논문, p.46.

⁵¹⁾ 경찰대개혁의 일환으로 대도시 경찰서의 경우 형사과 형사관리계에 3~4명으로 감식 반이 편성되어 24시간 대기하면서 3교대 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여 감식반 설치후 지문감식에 의한 용의자 신원확인실적이 최고 1,000% 이상 향상을 보여 현장감식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⁵²⁾ 경찰 감식요원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000년에 전년도 53,910건에 비하여 66%증가된 88,098건을 현장감식하여 과학수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를 검색하는 국가차원의 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생김새 또는 성질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은 어버이를 많이 닮는데, 이러한 어버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을 유전이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유전자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버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이것을 유전법칙이라 한다.53)

유전자 정보은행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강력범의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형이 입력된 강력범죄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에는 반드 시 검거되기 때문이다.

둘째, 강력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강력사건 수사에 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 등을 보면 조금 더 빨리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여 운행하였다면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1995년에 영국에서, 1998년에는 미국에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국가차원의 유전자정보은행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재개되지 않고 있어 이처럼 강력범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54).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감식에 대한 법적 인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술개발보다 더 시급한 것을 감정기관·감정관·감정기술에 대한 법적 인증제도의 실시이다. 선진국의 경우 간정 기관의 질적 통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거의 예외 없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통제기관이 전무하므로 자칫 질이 낮은 감정이 그대로 방치될 위험성이 있다.

⁵³⁾ 정의훈, "유전자 감식과 수사활용 방법", 「강력검사연구논문집 V」, 1996, 대검찰청, pp.230-231 참조.

⁵⁴⁾ 김상철, 전게논문, p.48.

4. 거짓말 探知機를 活用

심리분석이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진술의 진실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거짓말탐지기는 정상인이 거짓말할 때 생기는 진술의 진실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거짓말 탐지기는 정상인이 거짓말 할 때 생기는 불안정서로 인한 생리변화 중 호흡·피부 전류저항 및 혈압과 맥박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여 거짓을 추론할 수 있는 생리심리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검사기법은 백스터 검사기법⁵⁵⁾이다. 즉 거짓말 탐지기는 정상인이 거짓말 할 때 생기는 불안정서로 인한 생리변화 중 호흡·피부전류저항 및 혈압과 맥박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여 거짓을 추론할 수 있는 생리심리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검사기법은 백스터 검사기법이다. 이 기법은 백스터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법으로서 징후질문을 활용한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 검사기법은 미국에서 개발된 기법으로서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기에는 정서상 불합리한 질문이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신뢰를 획득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을 들라면 검사관의 자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심리분석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없으며, 검사관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자체양성 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⁵⁶⁾.

⁵⁵⁾ 백스터기법은 백스터(1960)가 발표한 것으로 흔히 '구역비교검사기법'이라고 불리 운다. 이 기법은 리드기법이 오직 한 가지 기법으로 실시되는 것과는 달리 'You Phase', 'Sky Phave', 'Exploratory Test'로 불리우는 3가지의 기법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동일검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독자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⁵⁶⁾ 김상철, 전게논문, p.47.

제5장 警察搜査體制의 提高方案

제1절 無境界時代에 있어서 廣域搜查力의 强化

1. 廣域搜查體制의 開發

무경계시대의 경찰로서의 구체적 대응책은 먼저 광역수사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경찰은 지역책임제로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각 시·도 경찰은 스스로 지역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에 지령실이 있지만 통신지령실내에는 지역관할의 지도 밖에 없고 타도의 저쪽이 어떻게되고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을 바꾸어 보자는 것으로 특수수사대라는 것을 만들었다57).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는 그 수법이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화 기동화 되고 있어 과학적인 추적수사와 전국 경찰관서간의 긴밀한 공조수사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경찰수사는 지역단위의 관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요 광역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수사기법의 과학화는 물론 평소 경찰관서를 포함한 유관기관 사이에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각종 범죄수법 자료의 관리·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공조수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58).

⁵⁷⁾ 일본의 한 예를 보면 도치기, 균바, 이바라기, 사이다마의 4현의 현경지역으로 인구로는 200만명정도 면적으로는 가나가와 현 정도의 크기의 초동수사를 4현의 수사원으로 편성하는 수사대가 통제하는 제도이다. 같은 취지를 1993년 2월에는 서동해 광역수사대를 기후, 아이지, 미혜를 3현으로 만들었다. 다만 지금의 경찰법으로는 각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로부터 「원조의 요구」가 없으면 타의 도도부현의 경찰관은 출동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경찰관은 출동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경찰관은 기정하여 「원조의 요구」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15Km까지는 자기현의 문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1999년 7월 16일 탈옥수 신창원 사건을 교훈 삼아 공조수사 강화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선 중요사건 발생시 지방청·경찰서간수사공조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통보하고 공조수사회의 개최를 정래화하며, 인접서간에 합동으로 수사긴급배치 훈련 정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59). 중요강력사건 발생시에는 이루어지기 위한 수사지휘의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공조규칙의 제도의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2. 情報通信시스템의 廣域化

지역 간 경찰의 무선전파의 파장의 다르면 범지 공조체제의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wide system이라고 해서 어느 곳이든 교신 할 수 있는 무선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정보통신은 방대한 경찰조직의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제반 치안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찰업무 과학화의 요체로써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치안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 경찰 정보통신을 대별하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및 매체로 하는 전산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유선망'은 유선통신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전국경찰서를 연결하는 자동전화와 팩시밀리,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통신망으로 구성운용하고 있다. 60)

경찰은 본격적인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1998년 종합정보체제의 업무활용 및 효율성을 고려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 경찰서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종합정보체제의 구축이 완료되면 경찰 관서별 기능별 전산시스템이 상

⁵⁸⁾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1, p.163.

⁵⁹⁾ 상계서, pp.163-164.

⁶⁰⁾ 상계서, p.307.

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지방경찰청별 자체 분산처리 시스템으로 활용되어 경찰행정업무의 과학화와 능률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치안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3. 廣域搜査専擔機構의 新設

지방경찰제의 도입 이전에 시급히 개선할 문제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공조의식을 지금보다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공조의식 함양이외에도 공조수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특히 중요수사사항이 여러 지방경찰청 관할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가 가능한 중앙경찰 소속의 광역전담수사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며, 긴급상황 하에서 각 경찰청 관할의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신속하게 이루어 초동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긴급배치체제의 전반적인 개선도 고려할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할 책임에 따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공조수사를 수행해 나가는 것만이 변화하는 현대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경찰상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단 중앙정부의 경찰청 형사국 산하에 어떤 지방자치경찰의 관할에도 구애받지 않는 광역성 범죄 수사를 전담할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61).

⁶¹⁾ 치안본주시절인 1983년 경찰청 수사 2과 산하에 완전한 기능의 광역수사기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광역수사전담본부라 할 수 있는 수사지도관실이 설치되어 1994년 6월까지 운영된 바가 있었다. 수사지도관실의 역할에 대해 대부분의 일선 수사관들은 아직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을 했던 수사지도관실이 경찰청 직제에서 폐지되기까지의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후 경찰청 형사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단이 1994년 11월 1일자로 발족된 바 있었다. 이 광역수사단은 1995년 4월에 경찰청 수사과의 공조계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廣域搜查 System 改善 Model

<표-17> 광역수사 System의 주요내용

구	분	1안 (지방청 중심 수사형)	2안 (1·3안 절충형)	3안(현 시스템 보완·개선형)	4안(현 시스템 유지형)
	본 방 침	*현 「광역수사대」 기구 *고관 사건 명시, 권한: 부터 해결시까지 전담, 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종 *광역수사대 전담사건에 *지방청에(가칭) 「범죄분 *현 「광역수사대」를 *광역수사단」은 예하 「중 *「중앙수사대」는 현합 구성	*현 광역수사대, 골 격(인력·역할)을 유지하되, 대장 등 지휘부 계급만 격상 * 현 지방청 외근수 사 인력 현행 유지		
주 요 내		개 권역으로 구분, 신설 *「지구수사대」는 경	는 지방청 관할 구역을 *「지구수사대」는 경찰 서 <u>강력팀 형사20%-70%</u> *지방청 수사·형사과	지역 실정에 따라 2~5	
T ajo	직 · 인 러	*수사·형사과 분과 청·서는 수사과로 통합	는 현행 유지 *일부 서의 경우 치안수요 간안, 수사·형사과 통합 *경찰서 강력팀의 야간 당직 인원은 서 별 실정 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지구수사대」미구성	*지구수사대, 미구성
	년 력 예	수사인력 1356명/ 5개 지구수사대 신설 *경무관(1) - 광역수사 단장 *총경(6) - 중앙수사대 장(1), 지구수사대장(5)	수사인력 약 597~999평/2-5개 지구수사대 신설 *경무관(1)-광역수사단장 *총경(3~6)-중앙수사대 장(1), 지구수사대장(2~5) *경정(12~24)-중앙수사대	*경정(4)-죄종별 수사	지구수사대 無 총경(1)-광역수사단장

광역수사의 시스템은 기본방향적으로 현 "경찰서 중심"수사체제의 장점은 가능한 한 살리면서 중요 강력사건은 지방청 직장 조직(광역수사대)이 초동단 계부터 전담 수사하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찰수사의 전문성·효율성·책임성의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모델이 되는 것을 <표-17>에서 작성하여 보았다.

<표-18> 광역수사System의 임무62)

구	분	1안(지방청 중심 수사형)	2안 (1·3안 절충형)	3안(현 시스템 보완·개선형)	4안(현 시스템 유지형)
임	무	*「중앙수사대」는	*「중앙수사대」는 기	*「광역수사단·대」	책임수사 대상사건
		기획수사에 주력	획수사에 주력		
				1) 중요살인사건	
		*「지구수사대」책	*「지구수사대」책임수	▷ 연쇄살인 등 사	회이목집중 사건
		임수사 대상사건	사 대상사건		
				2) 금품목적 납치·	유괴사건(채권·채무
		1)경찰서(지구대)	 1)살인사건(살인미수,	문제제외)	
		현행범 체포사건	폭행·상해치사 포함)	⇒ '04년 서울청 미·	귀가자 사건은 19,064
		(단순 폭행·상		건이며 범죄의심 사	건은 3,167건으로 이
		해·절도 등)을 제	2)금품목적 납치・유괴	중 3,150건 자진귀가	17건 수사중임
		외한 모든 사건(단	사건(채권·채무문제제	(2안의 경우도 동일	<u>)</u>
		순 변사포함)	외)		
				3) 기타 지방청장이	지정한 중요사건 및
		2)기타 지방청장이	3)연쇄·광역성 강·절	조직폭력 등 기획수시	}-
		지정한 중요사건	도사건(다량 휴대폰 절		
		및 조직폭력 등 기	도, 농축산물 절도, 귀		
		획수사	금속절도 등)		
			4)기타 지방청장이 지		
			정한 중요사건 및 조직		
			폭력 등 기획수사		

⁶²⁾ 광역수사대 창설, "방안한국적「광역수사 System」구축방안", p.6.

<표-19> 광역수사System의 장·단점

구 분	1안	2안	3안(현 시스템	4안
丁 七	(지방청 중심 수사형)	(1·3안 절충형)	보완·개선형)	(현 시스템 유지형)
	생빈도 편차로 인한	*지역별 강력사건 발 생빈도 편차로 인한 署간 업무부담 편중문 제 <u>대부분 해소</u>	인력 통합 및 수사기 능과 지원기능 분리 로 광역수사조직 운	의 계급 격상으로 책임수사 능력제고
장	사 전원을 지방청 소 속으로 전환, 사건에	*경찰서 강력팀 형사 의 20%~70%를 지방 청 소속으로 전환, 사 건에 따라 인력의 효 율적 운용가능	*경찰서 현 수사 기 능을 그대로 유지, 경 찰서 중심 수사체제의 강점인 지역 내 수사	체제의 강점인 지역 내 수사인프라 활용
점	을 초동단계부터 광역 수사단에서 수사함으	*중요강력발생사건을 초동단계부터 광역수 사단에서 직장, 수사 함으로써 전문성·책 임성 강화		
	에 대한 경찰서장의	*중요 강력사건의 지 방청 전담수사로 경찰 서는 체감 치안의 핵 인 강·절도수사에 전 념, 국민 민족도 상승		
	을 권역별 지구수사대 에 통합시킴으로써 지	*경찰서 소속 형사와 권역별 지구수사대소 속 형사간 이질감으로 인한 공조수사 미흡 우려는 상존	생빈도·지휘관 역량 편차로 署간 수사경	발생빈도·지휘관역 량편차로 署간 수사 경험 축적 기회 차
단 점	*'경찰이 권한을 중앙 에 집중, 거대 수사기	*살인·약취유인·중 요강도의 업무분장구 분으로도 명확하지 않 은 일부 강력사건에 대한 '떠넘기기식'수 사행태 잔존	*광역범죄에 대한 효 율적 대응 미흡	*실제 수사가 아닌 지도·점거 등만을 위한 지방청 외근인 력의 낭비 발생
	*지방청장의 개별사 건에 대한 1차 수사 책임부담 과중 우려		획수사 진행 중 중요 발생사건 수사 등에 동원 시 동 기획수사 중단 불가피	효율적 대응 미흡 *광역수사대 자체
				수사 인력부족으로 기획수사진행 중 <u>중</u> 요발생사건 수사등 에 동원시 동 기획
				수사 중단 불가피

<표-20> 지역별 지구수사대 설치 적용례

	지역별 지구수사대 설치 적용례					
	(※ 지방청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루 변형 운영)			
◈ 서울청	◈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울산청		
-1~4 안 적용 가능	-1~3안 적용 가능	-1~3안 적용 가능	-1~3안 적용 가능	-1~3안 적용 가능		
-1안 시 5개 권역,	-2안 적합	-2안 적합	-2안 적합	-3안 적합		
2안 시 2개 권역에	1개지구수사대	1개지구수사대	1개지구수사대	지구수사대 미설		
지구수사대 설치	설치	설치	설치			
◈경기청	◈강원청	◈충북권	◈충남권	◈전북청		
-의정부권, 수원권,	-영서와 영동지방	-청주시에 강력범	-천안,아산권 및	-군산, 익산 및 전		
시흥·안산권 등에	에 강력범죄 편중	죄 집중	대전권에 강력범	주권에 강력범죄		
강력범죄다수발생	발생	-3안	죄 집중	집중		
-의정부권, 수원권	-원주권 및 속초,	지구수사대 미설	-천안, 아산권에	-군산, 익산, 전주		
및 시흥·안산권에	강릉권에 각각 소	え)	1개 소규모 지구	권을 관할 하는 1		
각각 소규모 지구	규모 지구수사대		수사대 설치	개 소규모 지구수		
수사대 설치	설치		-대전광역시에 별	사대설치		
			도 1개 지구수사			
			대 설치(1~3)인 적			
			용기능 2안 적합			
◈전남청	◈경북청	◈경남청	※ 사무공간 확보			
-목포권, 여수, 순	-구미 및 경주, 포	-진주·마산·창	1안·2안 시			
천권 및 광주권에	항권에 강력범죄	원·김해권에 강	장기⇒독립건물획	보		
강력범죄 집중	집중	력범죄 집중	단기⇒1안 : 경찰	서 배속		
-목포권, 여수,순천	-구미권 및 경주,	-진주·마산·창	2안 : 치안	센터활용 분산 배치		
권에 각각 소규모	포항권에 각각 소	원·김해권에 1개	3안 · 4안 ∕	시, 현행 유지		
지구수사대 운영	규모 지구수사대	소규모 지구수사				
-광주광역시에 별	설치	대 설치				
도 1개 지구수사대						
설치(1~3안적용가						
능 2안 적합						

제2절 搜查人力 管理의 專門化

1. 新任搜查官 選拔方法의 多樣化

조직의 효율성은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질과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우수 인력확보를 위하여 경찰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켜 자질이 높은 우수인력의 자발적인 유인책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조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적능력·기술능력·용기와 아울러 철저함과 강인한정신력이 있는 바람직한 자질을 가진 형사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도고 본다. 특히 수사와 같은 전문 분야는 연간 모집 계획인원을 계열별로정기 모집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극적인 공보활동을 전개하고 모집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해야 한다63).

수사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인문과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자연과학을 전공한 일반대학 졸업자를 경찰조직에 특별채용 하게 되면 수사의 능률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경찰조직이 순응한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의 변화양상에 대응하여 현재의

⁶³⁾ 물론 종래에도 법과대학 졸업자나 무술특기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형사기동대·조사요원·사복기동대·수사요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선발이 있었으나 특별채용이후 수사부서에만 계속근무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앞으로는 수사관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할 기본적인 교육을 이미 대학에서 이수한자를 별도의 과정을 통해 선발하여 보다 전문화된 수사관으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찰을 학문으로 전공하는 4년 제 대학이 많이 생겨 우수한 인적자원은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직 경찰은 채용부터 일반경찰에서 분리하는 것이 실효가 있다고 본다. 한편 채용에 있어 경찰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과거와 달리 현저히 높아진 현시점에서 계급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현행 방식은 전근대적인 엘리트위주 관료사상의 잔재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찰은 순경부터 시작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전문성이 채용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황정익,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제언",「수사연구」, 2002. 7, pp.11-13).

수사경찰관의 지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무·회계·관세·건설·식품·보건·마약·공해·컴퓨터 등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특채하여 특수한 범죄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⁶⁴⁾.

사이버테러를 대처할 수 있는 전공자와 같은 수사능력이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전문 수사관들을 선발하여 근무케 하는 방안도 좋은 선례로 보고 있다.

악질화·흉포화·지능화되어 가는 강력범죄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방안으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중도 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되는 것도 좋은 대책으로 보아진다.

2. 人力運營 體制의 合理化

발생한 강력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전담 수사요원에 의한 끈질긴 추적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의 수사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타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전문성과 끈질김이요구되는 기획공작수사나 현장수사 등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므로 형사요원을 충원하여 인원을 늘리도록 하고 당직근무 중에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초동조치는 형사당직에서 하도록 하며,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를 수사내근 부서에 인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외근형사들의 손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급한 것이 수사인력의 증원이라 할 수 있다. 누적된 피로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도니 원인이 되고 있다. 단순한 증원 이외에도 주어진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란 관점에서 경찰관서별, 기능별 인력의 배분이 경찰의 업무영역의 재검토와 치안수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65).

⁶⁴⁾ 김윤환, "수사경찰관리의 개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65.

제3절 警察搜查方法과 制度의 改善

1. 初動措置 體制의 改善

우리나라에서는 112순찰제도가 도입된지는 얼마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12순찰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장검거체제는 범인검거의 경제성과 신속성, 확실성에서 그 어떤 수단보다도 나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장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사건접수와 신속한 보고·통보·수배조치 체제를 정비하여야 하겠다. 최초 신고인으로부터 112신고나 일반전화 신고시 각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112지령대의 화면에 신고자 전화자동추적장치를 부착,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여 파출소 112순찰차량과 형사기동차량이 신고장소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현장주변 범인검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6).

둘째,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수사관은 냉철하고 침착한 자세로 인명구조나 범죄의 진압·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현장에서범인의 인상착의·특징·사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범인의 도주방향에 대한 긴급수배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범죄가 유발되기 쉽다.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보존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 유류된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파출소 근무자들에 대한 현장조치·현장보존·초동수사67)요령에 대한 교육이 경찰 종합학교등 직무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⁶⁵⁾ 김상철, 전게논문, pp.67-68.

⁶⁶⁾ 오호종, 전게논문, pp.97-99.

⁶⁷⁾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지령실 근무를 한직으로 생각하고 상급자들도 지령실 근무자들에 대한 인사 상 배려를 하지 않아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부서에 비해 우수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오다가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내 지리에 밝고 상황판단능력과 초동수사능력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김상철, 전게논문, p.70).

2. 搜查資料 管理體制의 改善

수사경찰의 경우에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들이 체계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다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된다면 수사경찰업무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사건의경우 사건개요, 피의자의 인적사항, 수사의 방향, 적용된 법조, 검거 및 구속여부, 사건처리 시 애로사항, 수사실패 또는 성공의 직접적인 사유 등을 요약하여 전산자료화 할 필요가 있다.

검찰 송치 후 사건에 대한 관리체제확립, 즉 수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관련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수사의 기법을 향상시키는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와 기소 후 법원에서의 재판결과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다룬 사건의 진행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3. 搜查本部 運營의 合理化

중요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통일적이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 본부를 설치한다. 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일절의 수사는 수사본부장의 통제에 따라야하며 다른 경찰관서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수 사본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단순살인이나 강도사건을 전부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순강도나 살인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전담 반을 편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의 책임하에 전담수사를 행하고 복합적인 중요사건은 수사본부를 설치하되 수 사본부장은 자문성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수사본부의 설치를 요하는 중요사건은 거의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광

역수사 전담기구가 설치되기 전의 현실적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4. 犯罪統計 管理의 改善

국가 전체적으로 일원화되고 통일적 범죄통계관리기관이 없으므로 미국 FBI처럼 일원화하여 공신력을 높여야하며, 현행 총범죄 대상 통계관리는 비현 실적이므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요민생범죄로 전환하고, 현행 죄명표위주의 범죄통계관리를 지양하고 사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한다.

실제 범죄발생 시, 발생시점에서 다양한 입력항목을 채우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범죄발생 입력시점도 범죄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시점에서 입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정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정을 추진해야한다.

5. 수사경과제 도입

수사경과부여·평생수사관제를 확립하여 수사경찰 전문화를 만들자는데 의의를 둔다.

수사요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조직에 적응을 마친 재직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사의 관련 기능 소지자 등을 외부로부터 신규 공개 채용선발 하는데 기준을 둔다. <표 21>은 이와 같은 기준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수사경과 부여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정이하 전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계급이며 수사요원으로 보임되어 1년의 시보과정을 마치면, 수사경과로 분류하고 수사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수사경과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수사에 있어서 주어진 직책이나 그에

따른 임무를 구체화하고 전문화하므로 수사에 더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표-21> 우리나라에서의 수사요원 선발 기준

구	분	「순경·경장」및「경위」급 재직자중 선발	분야별 기능소지자 제한 공채
		<순경·경장>	<경정이하 전계급>
<u></u>	시	* 경찰경력 2년이상자	* 경찰수사 관련학과 전공, 학상
	·	<경 위>	상의 학력소지자
자	격	* 경위기본교육 이수자(경찰경력	* 사시특채자(경정급) 의무배치
		무관)	및 행시특채자 본인 희망 고려
		* 형사법·수사실무과목	* 경찰학개론, 수사학개론, 영어,
선	발		형법, 형소법
시	험	*기초소양 및 법률지식, 실무이해	※ 선발분야 및 계급에 따라 시험
		력등 측정(평균 80점 이상)	과목은 일부 변경실시
합격	취자	*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면	* 일반경과자 선발 절차에 준하
결	정	접을 거쳐 결정	여 합격자 결정

제4절 科學搜査體制의 確立

변사현장을 조사하는 목적은 다양할 것이나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는 죽음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으며, 다른 하나 는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단서를 잡거나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다.

범죄현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영역이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범죄현장은 더 이상 수사관들만의 배타적 영역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변사현장에는 과학이 필수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식기능의

보강을 위하여 첫째, 감식수사를 위한 충분한 수사이력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유전자정보은행과 유전자감식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함에 있어 지방경찰청 감식계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1. 鑑識搜查制度의 改善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는 죽음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단서를 잡거나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랄 확보하는 가하는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과학이 공조하여야만 한다. 또 한시성을 가진 복잡 다양한 현장과 시체를 검안하여 사안이 무엇인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병사인지, 또 부검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되는지 또 시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무슨 증거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필요로하게 될 것이다. 즉 변사사건을 적절한 때에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신속하고 일관되게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과학적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죽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적증거가 바탕이 되는 부검건수가 한해에 최소 8,600 건 최대 24,000건이 되어야 하나 6,000건을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서는 부검이 필요한 주검일지라도 부검을 거치지 않는 주검이 아무리 적게 잡 아도 2,600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비록 적은 수의 죽음일지라도 타살이 병사 또는 사고사로 오인되는 경우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⁶⁸⁾.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핵심을 짚고 논의한 개선책이 나온 것은 10여년 이라

⁶⁸⁾ 겸임검시제도란 법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등으로 하여금 검시를 전담하는 직책을 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검시와 수사를 겸임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 및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덴마크·소련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겸임검시제도라 하더라도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의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검시의 비 전문성과 절차의 복잡성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드물다.

는 세월이 흐르고는 있으나 검시당사자의 노력 부족과 정책 입안자의 무관심속에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죽음을 철저히 감독하는 독립적인 검시전담기구가 속히 창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법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검시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행 검시제도 하에서는 의문사가 오늘도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는 몇 가지 개선책을 찾아볼 수 필요가 있다.

첫째, 의문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죽음의 종류⁽⁹⁾를 의료법, 형사소송법 또는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빠짐없이 변사신고가 되도록 하고 수사관과법의학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둘째, 법의병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찰공의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일정기간 법의학 교육과 연수를 마치게 하여 명실공히 일선수사관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확한 검안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올바로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감식을 전담하는 과학수사계원들의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강도 높은 법의학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70).

셋째,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의학 판정기관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인을 확인하는 작업에 시체에 대한 의학적 판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중요한다. 대륙법계체제 하에서 죽음에 대한 조사의 책임이 수사 당국의 주체

⁶⁹⁾ 사인이 불명인 죽음, 범죄행위 등 폭력과 관련이 있는 죽음, 외상과 관련이 있는 모든 죽음을 포함한 외인에 의한 죽음, 중독사고,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의 죽음,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병원에 도착하여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시술 중에 사망한 경우,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 군대와 이에 준하는 각종시설에 수용 중 사망한 경우, 입양아의 죽음 등.

⁷⁰⁾ 채종민, "한국검시제도의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안", 「수사연구」, 2002. 10, pp.22-27.

인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의 의학적 검사의 결과 판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대륙법에 기초한 나라들은 법의학의 기반을 대학에 둠으로써 재판과 수사,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2. 遺傳子 鑑識에 대한 法的 認證制度의 設置

유전자감식의 근본기술이 되는 분자생물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감식 기술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변화방향은 일치확률을 더욱 높이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은 감정물에 대하여 감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간식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감정물에 대한 기술변화의 예로 이미 사용 중인 미토콘드리아 DNA 연기서열 분석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유전자감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과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치므로 전문가만이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감식 과정을 상당부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용이하도록 감정키트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향후 수년 내에 경찰차 안에 현장에서 간단하게 감식을 할 수 있는 키트와 해독하는 장치를 비치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한다. 기술적인 면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새로운 개발되는 기술들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술개발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감정기관, 감정관, 감정기술에 대한 법적 인증제도의 설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제기관이 전무하므로 자칫 질이 낮은 감정이 그대로 방치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는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벤처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는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각 감정기관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하여 표준감정절차를 작성하고 통제기관의 인증을 받는 일이다. 또한 한 번 인증받은 표준감정절차는 개정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준수하게 준수해야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일도 필요하다71).

3. 거짓말 探知機 運用上의 改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단과학의 발전에 따른 컴퓨터거짓말탐지기⁷²⁾를 전국에 보급하는 등 검사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 한국인에게 적합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통일된 거짓말탐지기와 검사실 규격, 표준화된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검사자에게 정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점은 우수 검사관 양성과 맞물린 문제지만, 연수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등으로 질문 작성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거짓말탐지기는 초동수사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담당자들의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⁷¹⁾ 남궁오, 전게논문, pp.77-78.

⁷²⁾ 경찰은 경찰청 및 시·도 지방경찰청에 배정된 컴퓨터거짓말탐지기를 형사사건은 물론 교통사고 등에도 활용함으로써 과학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2000년에는 전년도 2,348명에 비하여 24% 증가한 2,910명을 상대로 컴퓨터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38%인, 1,107명이 혐의 반응을 나타냈으며, 의뢰사건중 수사·형사범이 36%, 교통사범이 64%를 차지한 것으로 타나났다.

인하여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다른 증거도 뚜렷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마지막 수사방법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탐지기를 초동수사단계에서 실시하면 거짓말탐지기 기법상 다양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초기수사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6장 結 論

강력범죄는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는 물론 심각한 공포심내지 불안감을 남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주게 되어 건전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살인의 경우를 보면 물론 사망에 이른 자에게도 생명을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는 더 큰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死者가 가장이였을 경우 생계유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요강력범죄 현황과 최근의 특징은 양적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데 총 범죄보다 강력범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질적으로는 범행의 무차별화, 흉포화 반인륜화, 기동화·광역화, 도시화 경향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계층의 범죄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과자의 재범율이 높아있으므로 전과자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생한 범죄는 꼭 해결하여 범인을 검거,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을 빠짐없이 실행한다는 산 증거로 강력범들에게 무엇보다 큰 위하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 수사경찰의 조직과 인사관리 수사방법과 제도, 과학수사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수사조직과 인사관리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광역수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경찰청 훈령으로 되어있는 '공주수사규칙'을 입법화하여 광역수사체제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수사인력관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수사전문인력을 특별채용, 승진기회의 확대, 전문화

된 보직관리, 교육과정의 개선, 우수 교수 요원 확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점근무·강력범수사위주로 경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형사관리 행태·징계제도의 개선과 인력 증원을 통하여 수사요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야한다.

둘째, 경찰의 수사방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① 현장검거 와 보존체제를 강화하고, 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를 일원화하여 사건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민간협력체제를 확립하는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 례 및 조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전산망 운영체계의 개선 및 범죄정보 유통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전산자료 활용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광역수사전담기구가 창설될 때까지 수사본부 운영이 전문화·능률화되어야 한다. ④ 범죄통계 관리기관의 일원화, 통계관리대상 범죄·범죄발생 입력시 기·입력항목의 조정, 인지보고서에 근거한 통계원표의 작성, 검거율 위주의 범죄통계 산정제도의 개선, 다양한 분석항목의 개발, 범죄통계전담기능의 신 설, 유기적인 경학 통계연구체제구축 등을 통한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치안정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⑤ 강력범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피해자ㆍ신고 자·증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인 ' 범죄신고 자보호 및 보상규칙'을 보완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 요하다. ⑥ 주민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강력범죄의 신고를 유도하고 매스컴을 수사에 적절히 활용하며 기존의 112신고 전화체제를 개선하여 범죄정보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①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의학적 판정기관인 법의관제도의 도입과 의료법 개정, 법의학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검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② 감식요원의 기능사제도 실 시와 현장감식자료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과학적 감식기능을 강화하여야 한 다. ③ 새로운 심리분석기법의 개발·우수한 검사관의 양성 등으로 거짓말탐 지기 활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전자 감식에 대한 법적 인정제도의 실시, 유전자정보은행의 설치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인권보호 장치 등 과학적 수사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④ 과학수사연구소의 인력충원과 분소 및 범죄연구 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쉽게 접하는 매스컴 등을 통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잔인함, 그리고 누구나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겪게 된다. 또한 매스컴의 공포는 곧 범죄자들의 좋은 참고가 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크게는 유전자 감식 등과 같은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검거와 가깝게는 우리가 밀접해 있는 경찰들의 뛰어난 정보관리 시스템과 광역수사 등을 통한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발전할수록 급증해지는 범죄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參考文獻

■ 國內文獻

경찰공제회. 「수사 I」. 경찰공제회, 2002.

경찰공제회. 「수사 Ⅱ」. 경찰공제회, 2002.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00.

김용채·김상철·오수평. 「수사 I」. 박문각, 2003.

박상기 · 손동권 ·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4.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2002.

법무부.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4.

강신몽. "우리나라 현장검시의 개선점". 「수사연구」, 2000. 10.

김상철.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윤환. "수사경찰관리의 개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남궁오. "과학수사체제의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봉기. "한국 수사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성애. "형사절차상 DNA감정 : DNA 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주봉.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증거능력". 「형사증거법(하)」재판자료

- 23집. 법원행정처, 1984.
- 백형구.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양문승. "수사경찰의 과제 및 강화방안". 「수사연구」, 1998. 12.
- 오형석.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오호종. "강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문호. "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 「검찰」통권 제111호, 대검찰청.
- 이병곤. "무경계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승환. "유전자감식의 적용례를 통한 문제점의 고찰".「법조」. 통권 500호, 1999.
- 이황우. "지방경찰제의 도입모형". 「경찰행정」, 1998. 2.
- 임준태. "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이 도입에 관한 연구 -연쇄 살인범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호, 2004.
- 전민웅. "과학수사와 과학증거의 형사법적 규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기용. "경찰수사체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6.
- 정상기.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특수성". 「한남대과학기술법연 구」제6집, 2000. 12.
- 정의훈. "유전자 감식과 수사활용 방법". 「강력검사연구논문집 V」. 대검찰 청, 1996.
- 정주순. "민생치안범죄의 실태와 대책".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조병인 외. "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
- 조병인. "가정파괴범죄란 용어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1991. 10.

- 채종민. "한국검시제도의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안". 「수사연구」, 2002. 10.
- 한기민.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검시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황정익.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제언". 「수사연구」, 2002. 7.
- ---. "자치경찰에 대비한 광역수사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 보」, 1998. 11.

■ 外國文獻

- Adams, Frank, Selecting Successful Investigative Candidate, The Police Chief, July 1994.
- Beie, Piers and Messerschmidt, James, Criminology, 3rd ed., Bouldeer,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 Colin Snmner, The Sociology of Deviance : An Obituary, New York : Continuum, 1994.
- Edwin H. Sutherland, White Collar Crim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Julia Schwendinger and Herman Schwendinger, Defender of Order or Guardians of Herman Right?, in Ian Taylor, Paul Walton, and Jock Young, ed., Critical Criminology, London: Rontledge and Kegan Paul, 1975.
- Larry J. Siegel,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Wadsworth Press, 2001.
- Piers Beime, Inventing criminologist: Essays on the Rise of Homo Criminali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